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19 발의연월일: 2020. 10. 14.

발 의 자:이용호·최종윤·김수흥

강병원 · 한병도 · 이상헌

안호영 · 민병덕 · 정성호

김영호 · 소병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이하 '코로나 19')으로 인한 경제성장률하락 및 건강보험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율 경감 대책시행, 코로나 19 환자의 검사 및 진료비 지원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.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경기침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 및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의약품공급자가 「약사법」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'공익적 목적의 과징금'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.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마련된 과징금 재원의 전액을 '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'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고, 해당 사업이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일부개정 법률안제99조의2(공익적 목적의 과징금)제3항을 추가함(안 제20조제1 항제3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520호)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제3호 중 "제99조제7항"을 "제99조제7항·제99조의2제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재원 등) ① 재난적의료비	제20조(재원 등) ①
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	
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	
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	3
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	
법 <u>제99조제7항</u> 에 따른 지원	<u>제99조제7항</u> ·제99조의2제
금액	<u> 3항</u>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